

[일련번호 : 11]

# 양 천 구

## 시 정 요 구

**제 목** 육아시간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

**관 련 기 관** 서울특별시 양천구 △△과

**내 용**

### 1. 업무개요

△△과는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.

### 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」(행정안전부)에 따르면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. 육아시간은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,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의 사용은 연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.

### 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△△과에서는 동일한 일자에 연가의 사용으로 1일 최소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임에도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연가로 처리하지 않았다.

[표] 육아시간 부적정 사용 내역

부서	이름	위반일자	휴가 사용내용	위반내용
△△과			- 13:00~16:00(3시간) 연가 - 16:00~18:00(2시간) 육아시간	1일 근무시간 4시간 미만 (2시간 연가로 사용해야 함)

#### 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△△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#### 5. 조치할 사항

△△과장은

2024년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2시간을 연가일수(사용가능한 연가저축일수)에서 차감하고,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시정)